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. 11. 30 선고 2018가단549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11. 23.

판결 선고 2018. 11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. 8. 4. 접수 제1053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되지는 않았고, 변론기일에서도 피담보채무 중 약 700여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¹⁾)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형석

별지

1)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권에 미달하는 채무 일부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(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다2712 판결,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3681 판결 등 참조).